

1996. 5. 9(号)

- 總務社會委員會所管 '96年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-

豫 備 審 査 報 告 書

總務社會委員會

- 총무사회위원회소관 '96년도 제1회추가정정예산안 -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1996. 5. 9 (목)

1.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회부 예산안

가.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	
				1회 추경	증 감 율
계		75,060,912	68,148,762	6,912,150	
일 반 회 계		70,586,294	63,827,100	6,759,194	10.6%
특 별 회 계 (3 건)		4,474,618	4,321,662	152,956	3.5%

나. 세출예산(의회비 포함)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	
				1회 추경	증 감 율
계		46,600,493	45,228,731	1,371,762	3%
일 반 회 계		42,125,875	40,907,069	1,218,806	2.9%
특 별 회 계 (3 건)		4,474,618	4,321,662	152,956	3.5%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4월 30일 _____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년 4월 3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5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위원회('96. 5. 8)상정

제2차 총무사회위원회('96. 5. 9)의결

3. 예산안 규모 및 특징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1회 추경	증 감 율
계	70,586,294	63,827,100	6,759,194	10.6%
지 방 세	18,635,000	18,635,000	-	
세 외 수 입	22,377,928	16,143,937	6,233,991	38.6%
경 상 적 수 입	9,257,536	8,603,547	653,989	7.6%
임 시 적 수 입	13,120,392	7,540,390	5,580,002	74%
조 정 교 부 금	16,943,000	16,943,000	-	
보 조 금	12,630,366	12,105,163	525,203	4.3%
국 고 보 조 금	5,928,087	6,265,761	△337,674	△5.4%
시 비 보 조 금	6,702,279	5,839,402	862,877	14.8%

나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

○ 기능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1회 추경	증 감 율
계	42,125,875	40,907,069	1,218,806	2.9%
일 반 행 정 비	23,422,695	22,788,436	634,259	2.8%
사 회 개 발 비	16,471,339	15,893,878	577,461	3.6%
경 제 개 발 비	266,170	385,761	△119,591	△31%
민 방 위 비	282,729	244,226	38,503	15.7%
지 원 및 기 타	1,682,942	1,594,768	88,174	5.5%

○ 부서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1회 추경	증감율 (%)
계	42, 125, 875	40, 907, 069	1, 218, 806	2. 9
의 회 비	1, 039, 511	920, 270	119, 241	12. 9
총 무 국	6, 256, 628	5, 747, 238	509, 390	8. 8
총 무 과	4, 851, 502	4, 517, 628	333, 874	7. 4
재 무 과	610, 765	597, 894	12, 871	2. 2
세 무 과	278, 008	227, 857	50, 151	22
징 수 과	240, 261	166, 793	73, 468	44
민방위재난관리과	276, 092	237, 066	39, 026	16. 5
사 회 산 업 국	10, 694, 509	10, 337, 995	356, 514	3. 4
사 회 복 지 과	6, 077, 194	6, 389, 905	△312, 711	△4. 9
가 정 복 지 과	4, 540, 075	3, 872, 200	667, 875	17. 2
위 생 과	77, 240	75, 890	1, 350	1. 8
기 획 감 사 실	10, 953, 680	10, 971, 498	△17, 818	△0. 2
문 화 공 보 실	2, 874, 059	2, 846, 047	28, 012	1
민 원 봉 사 실	478, 330	423, 293	55, 037	13
보 건 소	2, 089, 257	2, 072, 115	17, 142	0. 8
동	7, 739, 901	7, 588, 613	151, 288	2

다.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소 관 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	1회 추경	증 감 율
계		4, 474, 618	4, 321, 662	152, 956	3%
의 료 보 호 기 금	사회복지과	3, 876, 606	3, 864, 413	12, 193	0. 3%
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		547, 795	407, 032	140, 763	34%
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	총 무 과	50, 217	50, 217	-	

라. 예산안의 특징

- '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고,
- 법적, 의무적 경비와 당면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일반회계 세입부분

- 추경예산 세입중 경상적 세입수입은 지난 5.1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도로, 하천 사용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적정수준의 징수 교부금 규모를 증액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(구) 괴정3동사 매각수입과 잡수입등에 대하여는 과년도 세입규모를 추계하여 적정규모의 세입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도 이는 결산과 연계되어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전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바 이부분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개선노력이 요구됩니다.
-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과 금회추경 합쳐 총 82억여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의 10%를 초과하는 과다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차후 이와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중 특별교부세 3억과 지방양여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한 간단없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나,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6천만원중 거의 1/3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이 그리고 고용 촉진훈련예산도 당초 1억 9천만원중 1억 2천만원이나 줄어든 것은, 수용인원의 감소등에 기인된다 하더라도
- 타구에 비해 우리구에 정신요양시설이 많은점 등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일반회계 세출부분

-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금회 증액된 세출예산이 12억여원이나 이중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, 일반운영비등이 전체의 40%가 넘는 5억 1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치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,
- 아울러 각 부서별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계상해 놓고 본다는 다소 미온적인 생각이나 추경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초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검토결여 등 전력을 다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.
- 세부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큰 여건 변동이나 새로운시책의 개발등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11대를 비롯하여 프린터기,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약 78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

-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1억 7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납세고지서 및 체납세 고지서 등 우편료가 당초예산 64백만원에서 1억 57백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우편요금이 15%정도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초보다 2배이상 늘어난 부분과
 - 시설비의 경우에도 정비대상 시설물을 당초보다 추가하거나 당초 누락시켰다가 금후 추경에 포함한것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.
 -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부족등으로 삭감된 사업등에 대하여 사업내용이 변경 되므로써 불가피하게 재 계상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으나 차후부터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, 이외 자치법규집 및 통계연보를 중회 또는 부수를 늘려 발간하면서 기존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데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
- 앞으로는, 예산편성 방법이나 기준등을 과거의 폐쇄적인 관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등이 각 부서별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당초 사업선정을 잘못하여 대규모 사업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되어 지연되거나 또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시 그만큼 투자재원이 묶여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없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.

- 예산을 총괄 관리,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결산추계를 면밀히 분석,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추경재원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되면 그해에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, 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과감한 개선으로 매년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액 전체를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부문에 소요 예산을 적정배정할 수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그 효과도 한층 높일수 있을 것이 기대될 뿐 아니라 추경에 편성되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예방될 것이며,

- 추경편성에 소요되는 각 부서별 인력이나 물자, 시간등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주민복지증진이나 시책개발,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투입된다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에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

-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가 시비로 증액된 것과 '95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예산내역 조정 수준이며,
-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작년도 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41백만을 세입으로 하여 금년도 생활안정기금 용자 대상자를 늘려 용자토록 하는 내용이며,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음.

5. 심사보고 요지 (삭감액 내용)

○ 일반회계

구 분	예 산 액	위 원 회 삭 감 액	조 정 예 산 액
총 계	1, 218, 806	23, 353	1, 195, 453
일 반 행 정 비	634, 259	18, 756	615, 503
사 회 개 발 비	577, 461	4, 597	572, 864
경 제 개 발 비	△119, 591	-	△119, 591
민 방 위 비	38, 503	-	38, 503
지 원 및 기 타	88, 174	-	88, 174

6. 심사결과

○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: 원안의결

○ 일반회계 세출 : 수정의결 (삭감부분 23, 353, 000원을 예비비로 계상)

▷ 일반회계 예비비 968, 145천원을 991, 498천원으로 증액

○ 특별회계 세출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 요지

울속도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150, 000천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.

첨부 : 총무사회위원회소관 '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요구내역 1부.

-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-

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(증액) 요구 내역

《일반회계》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단 체 장	위원회 수정액		조 정	수 정 이 유 와 내 역	비 고
관	항	세 항		제출예산액	감 액			
총 계				32,553	23,353	9,200		
일반행정	내무행정	서 무 관 리 (자산취득)	656	656		-	○ 무선호출기 구입비 (100,000원×4대) ○ 무선호출기 사용료 (8,000원×4대×8월) ⇒ 기존보유호출기 활용사용	p50
	재무행정	재 산 관 리 (일반운영)	2,600	1,100		1,500	○ 구청사 물탱크 청소 (520,000원×5개소) ⇒ 산출내역과다계상 개소당 300,000원으로 조정	p57
		(시 설 비)	9,000	4,000		5,000	○ 본, 별관화장실 개보수비 (1,000,000원×9개소) ⇒ 사업규모 5개소로 축소조정	
		회 계 관 리 (일반운영)	1,000	1,000		-	○ 정기재물조사 관련 수용비 ⇒ 기정 일반운영비로 대체활용	p70
		재 산 관 리 (시 설 비)	6,000	6,000		-	○ 괴정3동 재활용창고 설치비 ⇒ 사업효과 및 활용방안 분석미비	p113
사회보장	가정복지	가 정 복 지 (자산취득비)	1,717	1,717		-	○ 노인교실 비품 및 장비구입비 (책상, 의자, 방송시설) ⇒ 여타시설 지원 사례 없음	p141
		부 녀 복 지 (일반운영비)	180	180		-	○ 주부기술교육, 주부전통교육, 주부글잔치대회 홍보전단일반 수용비 ⇒ 반상회 회보 활용방안 검토	p142
			5,400	2,700		2,700	○ 주부기술교육강사 수당 (100,000원×20일×2회) ○ 주부전통교육 강사수당 (100,000원×14일) ⇒ 개최일수 1/2축소조정	p143
일반행정	기획관리	예 산 운 영 (보 상 금)	3,000	3,000		-	○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⇒ 지급대상 범위축소 조정검토	p246
		통계전산운영 (자산취득비)	3,000	3,000		-	○ 구정자료실 서가구입 ⇒ 사업의 시급성 재검토	p250